

미국

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2018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 신청이 아닌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판시한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각 항소법원별로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제소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각 항소법원별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나 재판관할권 쇼핑(forum shopping) 문제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업체로서 뉴스 웹 사이트인 피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한 이후에도 피고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 원고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3월 피고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한 이후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 신청을 함.

☐ 관련 미국 저작권법 조항

- 제411조 제(a)항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사전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절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은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410조 제(a)항 및 제(b)항은 저작권청장은 심사를 통하여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밖의 저작권법상 법률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그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410조 제(d)항은 저작권 등록의 효력발생일은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신청서, 납본, 그리고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규정함.

소송 경과

- 2016년 5월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림.^{<1>}
- 2017년 5월 제11 순회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한 전제 조건인 저작권 등록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다고 판시함.^{<2>}
 -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청장 모두의 행위를 요구함.
 - 저작권법 제410조 제(b)항은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신청 후 저작권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신청시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면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을 거부할 권한이 없을 것임.
 - 저작권법 문구상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장의 심사 이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시점은 저작권 등록 신청 시점보다 늦어야 하며 저작권청장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 이후여야 함.
- 2017년 10월 원고는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허가를 연방 대법원에 신청함.
- 2018년 1월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은 미국 법무부에 제11 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미국 법무부의 의견

- 2018년 5월 법무부는 다음을 이유로 들면서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은 저작권청이 저작권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한 이후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 신청을 허가할 것을 요청함.

<1>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LLC,, 2016 WL 9045625 (S.D. Fla. 2016).

<2>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LLC, 2017 WL 2191243 (11th Cir. May 18, 2017).

- 등록의 명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 공적 등록부에 실제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저작물이 공적 등록부에 들어가고 등록이 저작권법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이 요구됨.
-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은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은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즉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저작권자가 저작권청장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가 무의미해짐.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

- 2018년 5월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서 저작권청 역시 저작권법상 문구, 구조와 연혁을 비추어 볼 때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승인이나 거절 행위를 해야하므로 저작권 등록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해석함.

대법원의 상고 허가

- 2018년 6월 28일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판시한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대법원의 상고 허가의 영향

-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각 항소법원별로 저작권 등록 효력 시점의 기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5 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 신청시점에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 이에 따르면 저작권청이 저작권 신청에 대하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가 신청서와 함께 납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등록이 이루어진 것임.
 - 제10 순회항소법원과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완료 시점에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 이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청의 등록 또는 등록 거절과 같은 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제2 순회항소법원을 비롯한 나머지 순회항소법원들은 저작권 등록 시점에 대한 항소법원 간 상이한 해석들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음. 특히 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제2 순회항소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음.
-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제소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각 항소법원별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나 재판관할권 쇼핑(forum shopping)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MILeKH>

<https://bit.ly/2u4byr5>

<https://bit.ly/2tRQ0yJ>

<https://bit.ly/2NkYsOS>

미국**춤추는 아기의 UCC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분쟁소송이
결국 합의로 종결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2007년 2월 7일 Stephanie Lenz가 자신의 2살짜리 아기인 Holden Lenz가 부엌에서 유명 가수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이튿날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문제가 된 이른바 ‘미국판 손담비 미쳤어 동영상’ 사건으로 유명한 Stephanie Lenz와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양 당사자는 2018년 6월 27일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개요

- 2018년 6월 27일(미국 현지 시각) 이른바 ‘미국판 손담비 미쳤어 아기 동영상’ 사건으로 유명한 Stephanie Lenz(이하 ‘Lenz’)^{<1>}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이하 ‘UMPG’)^{<2>}간의 ‘Dancing Baby’ UCC 동영상 사건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1> Stephanie Lenz는 작가 및 편집자이며 ‘Dancing Baby’ UCC 동영상 사건의 아기 주인공이자 현재는 12살의 중학생 Holden Lenz의 부모임. Stephanie Lenz는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Kwun Bhansali Lazarus 법률사무소의 Michael Kwun로부터 무료 변호(pro bono)서비스를 제공받았음.

<2>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UMPG’)은 전 세계 37개국에 44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음반제작사로서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음. ABBA, Justin Bieber, Miley Cyrus, Eminem, Selena Gomez, Justin Timberlake, U2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함.

사실관계

- 2007년 2월 7일 Lenz는 자신의 2살짜리 아기인 Holden Lenz가 부엌에서 유명 가수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이튿날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음. 동영상의 음질은 그리 좋지 않았으나 동영상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노래가 프린스의 곡 ‘Let’s Go Crazy’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식할 수는 있었음.
- 얼마 후인 2007년 6월 4일 가수 프린스의 저작권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던 UMPG는 Lenz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Let’s Go Crazy’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동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중단 요청을 유튜브에 보냈음.
-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받은 유튜브는 이튿날 해당 동영상을 게시중단 하였고, 2007년 6월 5일 Lenz에게 UMPG의 요청으로 인해 동영상이 게시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DMCA법상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냄.
- 이에 대해 Lenz는 2007년 6월 27일 UMPG의 게시중단 통지에 대항하는 통지서(counter-notification)를 유튜브에 발송하여 자신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게시 중단된 동영상을 다시 게시해줄 것을 요청함.
- 유튜브는 DMCA 규정에 따라 Lenz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다시 게시하였지만 Lenz는 2007년 7월 24일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의 지원을 받아 UMPG가 공정이용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게시중단 통지를 한 행위는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한 DMCA 제512조 (f)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UMPG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3>}.
- 이에 대해 UMPG는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 유형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 내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용이 아니라 단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OSP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3> 김혜성, “[미국] 법원,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에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저작권 동향」 제2015-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1심 법원의 판단^{<4>}

-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저작권자가 DMCA에 따른 게시중단 통지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저작권자가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고 OSP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불성실한(in bad faith) 행동으로서 제512조 (f)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5>}.
- 동 법원은 DMCA 제512조 (f)를 규정한 입법자의 목적은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게시중단 통지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저작권자가 동 조항에 따른 책임을 쉽게 면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상 동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함.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단^{<6>}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제9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의 한 유형으로 공정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DMCA 제512조 (c)에 근거하여 OSP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정이용이 단순히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ce)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동 법원은 Lenz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DMCA가 문제된 동영상의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OSP인 유튜브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어 Lenz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DMCA 제512조 (f)에 따라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러한 게시중단 요청 통지로 인한 Lenz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음.
- 법원은 다만 저작권자가 공정이용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해당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고하여 OSP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는 행위는 비록 그 판단 결과가 옳지 않더라도 그러한 저작권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음^{<7>}.

<4>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5> 김경숙, “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년.

<6> Lenz v. Universal Music Corp., 2015WL5315388 (9th Cir., Sept. 14, 2014).

<7> 최희식,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예외”, 「2017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26면.

- Lenz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저작권자의 판단 및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년 6월 Lenz의 상고를 허락하지 않았음.
- Lenz와 UMPG 간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공정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견해를 바꾼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게시중단 통지 남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양 당사자는 언제, 왜,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단지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언론에 발표함.
- 공동 성명서에서 양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에 합의를 하였는지, UMPG의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이전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새로운 절차가 채택되어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게시 중단 통지(takedown notice)를 시행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음.
- UMPG의 수석 임원인 David Kokakis는 UMPG는 소속 작곡가 및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른바 ‘Lenz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잠재적인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었고 동 사건을 통해 이전의 시스템보다 공정하며 현명하며 정리되어진 게시중단 통지(takedown notice)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소송의 당사자인 Stephanie Lenz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UMPG가 11년 전에 현재와 같은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접촉하여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UMPG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음악 산업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훌륭한 통지 후 게시중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함.
- 최근 들어 미국의 음악 산업과 관련한 단체들은 현재의 통지 후 게시중단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자들과 OSP들은 OSP상의 저작권 침해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8>}.

<8> 유현우, “[미국] 음악 단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 희망”,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O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자의 통지 후 게시중단 조치 남용 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금을 DMCA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게시중단 요청으로 인한 OSP들의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9>}.

※ 참고 자료

<https://bit.ly/2LiPbB>

<https://bit.ly/2J6AdRk>

<https://bit.ly/2J6AlAi>

<https://bit.ly/2yTXMwK>

<https://bit.ly/2tGZB8U>

<9> 권세진, “美 워드프레스, DMCA 남용 근절 위한 법정손해배상 도입 제안”,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5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6년. 21-22면.

미국

법원, 텍스타일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의류업체에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 지급을 명령함.

박형욱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박사수료)

텍스타일의 사용을 위해 창작된 원고의 2차원 그래픽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직물과 의류를 원고의 허락 없이 구매, 판매, 거래, 광고, 제조하거나 소매상점,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 생산, 배포 및 판매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침해와 대리침해, 기여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6월 11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원고의 권속판결신청을 승인하고, 저작권법 제504조와 제505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피고들에게 명령함.

⚖️ 사실 관계

- Tropical Textile, Inc(이전엔 Joanne Fabric, Inc 으로 알려진, 이하 ‘원고’라함)는 캘리포니아 L.A를 주 사업소재지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가공되지 않은 직물을 염색, 프린트 등의 후처리 가공을 하여 의류제조업자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직물 가공판매업 역할을 하는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임. 원고는 특히 텍스타일^{<1>}과 의류(garments)에 사용하기 위한 독창적인 2차원 그래픽작품을 창작하거나 그것들의 배타적권리를 취득하여 패션 산업에서 거래해오고 있음. 또한 최고 품질의 시장성과 심미성을 가진 독창적 디자인을 제작하고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비해오고 있음.
- 원고는“MO-2939”(이하 ‘대상 디자인’이라함)로 불리는 2차원 예술작품의 소유주이고 저작자임. 대상디자인은 2012년에 창작되어 2012년 1월23일 발행되었으며 2017년 5월9일 미국 저작권청 으로부터 유효한 2차원 시각저작물로 등록받음.^{<2>} 원고는 대상 디자인을 텍스타일위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패턴으로 양식화하고 샘플화 했으며, 대상디자인을 포함하는 직물의 판매를 위한 협상도 활발하게 해옴.

<1> 텍스타일(textile): 직물이나 옷감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천’ 이라고 부름. 네이버 사전 참조, 2018.07.07 방문.

<2> 저작권등록정보: <https://www.copyright.gov/>; 등록번호 VA0002049419 , 2018.07.07. 방문.

- Twin Star Works, Inc(“Pacificplex”로 영업해온, 이하‘피고’라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의류를 수입, 생산, 유통 및 판매하는 의류업체로서 캘리포니아를 사업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Evers는 피고의 CEO로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임.
- 원고는 피고가 대상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하‘침해 디자인’이라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물(fabric)과 그 직물로 구성된 의류를 판매, 거래, 광고, 제조했다고 주장함. 특히 침해 디자인을 포함하는 “Candelabra Print Maxi Skirt” 와 “Ornate Filigree Print Maxi Skirt”를<3> 피고가 판매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Evers가 “그의 사업체 뒤에 숨어있다”고 주장하며 침해 디자인을 포함한 직물 및 의류를 구입, 판매, 제조, 수입 및 배포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와 Evers(이하‘피고들’이라함)가 아무런 제약 없이 ① 원고의 쇼룸(showroom)<4> 및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통해; ② 제3의 공급업체(vendors)가 대상 디자인의 복제본을 불법적으로 배포한 경우를 통해; ③ 원고의 “strike-offs”<5>, CAD서류, 직물 견본 및 샘플을 통해; ④ 대상 디자인을 포함하는 직물로 제조되어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류들을 통하여 대상 디자인에 접근해왔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이 소매상점, 카탈로그 및 온라인 웹사이트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침해 디자인을 포함하는 의류를 수입, 생산, 배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대상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의 불법적인 재생산, 수입, 구매, 거래, 광고, 배포, 판매를 고의적으로 유인하고 참여하고 방조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가 침해를 감독할한 권리와 능력을 가졌고 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함.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저작물에 대한 기여침해와 대리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들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래라고 주장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직접 침해와 대리침해, 기여침해에 대한 침해금지명령을 요청하고 피고의 이익 환수와 법정손해배상액 및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판결 전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3>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고의 침해 디자인 참조 : <https://www.pacificplex.com/collections/bottoms>, 2018.07.07. 방문.

<4> 쇼룸(showroom): 의류 신상품을 바이어나 언론매체, 광고업체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진열실이나 전시실 공간. 네이버 사전 참조, 2018.07.07. 방문.

<5> strike-offs: 바이어를 위한 실제 생산 직물에 실제 기본 색상이 인쇄된 실제 크기 원단의 샘플, <https://bit.ly/2NGzSIv> 참조, 2018.07.07.방문.

사건 경과

- 2017년 9월14일 원고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이하‘법원’이라함)에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12월22일 저작권침해, 대리침해, 기여침해를 이유로 하는 수정된 소장을 제출함.
- 2018년 5월14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궤석판결신청(motion for default judgment)을 함.
- 2018년 6월11일 법원은 심리 후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궤석판결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원고에게 32,932.84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령함.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 3만달러, 변호사 비용 2,400달러, 그리고 소송비용 532.84달러를 합하여 산정됨.^{<6>}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답변하지(plead) 못했거나 방어하지(defend) 못했을 때, 원고가 특정금액을 청구하지 못했을 때 원고는 법원에 궤석판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궤석판결을 Eitel 요소들에^{<7>} 근거하여 신청함.
- 법원은 Eitel의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가지 요소 모두가 원고의 궤석판결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궤석판결신청을 인정함.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법 제101조 이하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 침해 입증에 위해 원고는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와 독창적인 작품의 구성요소의 복제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은 복제는 두 작품간 보호받는 요소들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당사자가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입증이 된다고 판단함. 또한, 두 작품이 현저하게 유사한지 보여준다면 접근의 증명 없이도 복제가 입증된다고 판단함.

<6> Tropical Textile, Inc. v. Twin Star Works, Inc. 2018 WL 2966960, Case No. 2:17-cv-06800-CAS(AGRx),(C.D.Cal 2018)

<7> 제9연방항소법원이 Eitel v. McCool, 782 F.2d 1470, 1471-72 (9th Cir. 1986) 판례에서 궤석판결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 7가지 요소들; ① 원고에 대한 손해(prejudice)의 가능성; ② 원고의 실질적인 청구의 본안(merits); ③ 고소장의 충분함; ④ 소송에 걸린 금액의 합계; ⑤ 주요사실들에 관한 논쟁의 가능성; ⑥ 피고의 궤석이 용인할만한 해태(excusable neglect)인지 여부; ⑦ 본안 결정을 선호하는 강한 정책.

-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등록은 저작권의 유효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대상디자인과 피고들의 침해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검토 후 침해 디자인의 각 요소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침해 행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 ② 침해행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피고에게 있을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Evers가 침해 행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졌고, 침해 행위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졌으며, 침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의 불법 복제, 수입, 구매, 마케팅, 광고, 배포 및 판매를 유인하고 참여했다고 주장함.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Evers에 대한 대리침해 주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Evers의 대리침해를 인정함.
- 저작권법은 제504(b)에 따른 실손해액이나 제504(c)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을 제공함. 법정손해배상액은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며, 제504(c)(1),(2)에 따라 750달러 내지 3만달러 사이에서 정해지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 15만달러 까지 인상됨.
- 원고는 법원이 저작권법 제504(c)(1)에 근거하여 최고 법정손해배상액인 3만달러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함. 무엇보다도 피고들이 원고의 대상디자인을 침해함으로써 피고들의 디자이너 고용비용을 줄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의 침해로 원고의 잠재적인 수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궤석하고 소장과 궤석판결신청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고들의 기록을 원고가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실된 수익이나 피고의 이익에 관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실제손해액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침해자의 통제 안에 있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 3만달러는 적절하다고 판단함.
- 저작권법 505조는 법원이“전체비용의 회복”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여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 소송에 있어서 원고들은 승소자로서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원고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지방민사규칙 55-3에 따라^{<8>} 2,4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지방민사규칙 55-3에 따라 판결금액이 1만달러와 5만달러 사이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1,200달러에 판결금액 중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6%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산정됨.^{<9>}

<8> C.D. Cal. L.R. 55-3: Default Judgment–Schedule of Attorneys' Fees.

<9> \$1200 plus 6% of the amount over \$10,000, 즉, \$1200 + (\$20,000 x 6%)= \$2400.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인 3만달러를 기준으로 2,4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산정됨. 또한 원고는 소송비용 상환을 위한 금액 532.84달러도 청구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Eitel의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권삭판결 신청을 부여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 3만달러와 변호사비용 2,400달러, 소송비용 532.84달러의 총합계인 32,932,84달러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명령함.

평가 및 전망

- 텍스트타일이 단순한 직물이 아니고 그래픽이미지와 색상, 무늬 등을 시각적으로 또는 소비자 취향에 맞게 시장성과 유행성을 반영하여 제작된 의류의 소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텍스트타일의 포함된 그래픽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훨씬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음.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는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침해에 해당하는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함.
-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손해 및 침해자의 이익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은 과도하지만 았는다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umz02O>

<https://bit.ly/2KXW5Dv>

<https://bit.ly/2m7jTH3>

<https://bit.ly/1kORhQl>

<https://bit.ly/2ujtHBd>

EU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DSM 저작권 지침안이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의 비판 속에서 부결되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U는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콘텐츠 필터링 의무 부과(제13조) 등의 규정을 담은 DSM 저작권 지침안의 입법을 추진함. 이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은 DSM 저작권 지침안의 제13조가 인터넷을 파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함.

 **DSM 저작권 지침안**

- EU에서는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법 체제 구축’을 목표로 DSM 저작권 지침안^{<1>}의 입법을 추진함.
- 그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된 것은 ① 제11조 ‘디지털 이용에 관련된 언론 출판의 보호’ 및 ② 제13조 ‘이용자가 업로드 한 대량의 작품이나 소재를 보존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한 보호된 콘텐츠의 이용’임.
- 간단히 말해 제11조는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언론 기사를 투고하면 관련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2>}가 그에 관한 저작권료를 언론 출판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임.
 - 제11조는 흔히 링크세(Link Tax)라고 함.^{<3>}
- 제13조는 이용자에 의한 문서·음성·정지화면·동영상 등의 콘텐츠 업로드를 허가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저작물 데이터베이스^{<4>}와 대조하여 각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 제13조는 구글 산하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상정한 조항으로서 2018년 5월에 확정됨.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 593 final - 2016/0280(COD).

<2> Google, Twitter, Facebook 등을 말함.

<3>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DSM 저작권 지침안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을 담은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음.

<4>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저작물과 그에 관한 권리자 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함.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 정보 등은 저작권 소유자가 업데이트 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가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상의 저작물이거나 그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콘텐츠의 이용 허락이나 이용 거부 조치를 취해야 함.

○ 특히 제13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임.

DSM 저작권 지침안 제13조에 대한 비판

○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DSM 저작권 지침안 제13조에 대해 ‘인터넷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함.

-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등의 IT 기업, 디지털 권리 단체, 스타트업 그룹, 연구자 등 역시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함.

- 이 규정은 인터넷을 ‘공유나 혁신을 위한 오픈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자동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임을 지적함.

○ EFF는 근본적으로 제13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콘텐츠 ID’^{<5>}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를 지적함. 예를 들어, 콘텐츠 ID 시스템을 도입한 유튜브에서는 적절한 콘텐츠 업로더를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저작물인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게의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아티스트 앨범 재킷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업로드 하였음에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제13조가 콘텐츠 ID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에 실패한 책임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에만 묻고 시스템을 남용하는 측에 묻지 않는다면, 인터넷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스템을 엄격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운용 하에서는 누군가가 실수로 또는 거짓으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인용하는 것이 곤란해 질 수 있음.

- 콘텐츠 소유자는 보트(bot)에 의해 저작권 침해자로 잘못 판단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프로바이더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음.

<1> 콘텐츠 ID는 관리자가 등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희망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임.

- 무엇보다 제13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을 지닌 기업 이외의 기업의 시장 진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제13조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대량의 작품이나 소재’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서, 음성,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규제 대상으로 포섭함. 그 때문에 패러디를 만든다거나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문화 전달 자체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제13조의 규제 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제13조는 ‘비영리 활동’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도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함.
 - 위키피디아는 대량의 참조 링크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링크가 소실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음. 제13조가 도입되면 더 많은 링크가 소실될 것으로 예상됨.
- EFF는 제13조가 재검토 되지 않고 도입되는 것은 위험하며, 그것이 야기할 이차적 충격은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DSM 저작권 지침안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 2018년 6월 20일 DSM 저작권 지침안이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에서 찬성 278표, 반대 312표로 부결됨.
- 이번 부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큰 논란이 있었던 DSM 저작권 지침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유럽 소비자기구(Bureau Europea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BEUC)는 ‘인터넷은 이용자가 자신의 작품이나 의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부결로서 균형을 잃은 DSM 저작권 지침안의 수정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함.
- 2018년 9월 10일 2번째 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HucIRk>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4546620>

<https://tcrn.ch/2IVFYB7>

<https://bit.ly/2qG2syX>

독일

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영화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 사이트 운영자나 이 사이트의 호스트 제공자에게 침해 방지를 요청할 수 없다면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이 사이트의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방해자 책임의 법리에 근거하여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 원고는 ‘괴테 스쿨의 사고뭉치들 3’(Fack Ju Goethe 3)이란 독일 코믹 영화의 저작권법상 이용권자로서 특히 이 영화의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음(Constantin Film). 피고는 3백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임(Vodafone).
- 이 영화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독일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2017년 1월 23일까지 약 6백만명이 이 영화를 관람함.
- 이 영화는 2017년 11월 7일부터 ‘kinox.to’란 스트리밍 사이트^{<1>}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됨.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법적 책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2017년 11월 20일 kinox.to 운영자에게 이 사이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사이트의 호스트 제공자에게도 이러한 침해를 경고함. 호스트 제공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변호사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에게 가입자들이 이 영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kinox.to가 이용하고 있는 도메인과 IP주소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서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영화가 계속해서 피고의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이용되자 피고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함.

<1> kinox.to 사이트는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영화나 TV 연재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로 연결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이 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kino.to의 뒤를 이은 것으로 여전히 불법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음.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연방대법원의 방해자 책임 법리^{<2>}와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에 의해서(제7조 4항) 영화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kinox.to와 이 사이트의 호스트 제공자에 대한 침해 경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접속 중개자인 피고가 이들을 대신하여 이 영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kinox.to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7년 TMG의 3차 개정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방해자 책임에서 면제되기 때문에(제8조 1항 2문) 연방대법원의 방해자 책임에 대한 법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며 IP 차단은 과잉차단의 위험이 있고 DNS 차단은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함.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뮌헨 지방법원과 뮌헨 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과 2018년 6월 14일 TMG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함.^{<3>}
- 2017년 개정된 TMG 제8조 1항 2문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TMG에 의해서 책임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이나 침해제거 또는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조항과 EU 지침의 관련 규정 및 TMG의 일반규정의 관계가 문제됨.

<2>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행위자 책임, 방조자 책임, 방해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 행위자 및 방조자 책임이 부정됨. 독일 판례와 통설은 형법의 방조범 이론에 따라 방조범의 본질상 ‘고의’ 방조만 인정하고 ‘과실’ 방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과실 방조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적용되던 방해자 책임을 저작권법에 전용함. 즉 불법행위에 고의의 공동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방해자로서 그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 방해자 책임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야기한 거래행위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됨. 이러한 점검의무를 위반하면 현재의 침해상태를 제거하거나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면 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 경고 비용과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지만 손해배상은 부담하지 않음. 방해자 책임은 우리의 과실 방조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현재 독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부분은 방해자 책임으로 해결되고 있음. 따라서 방조자 책임과 방해자 책임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방조자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와 과실 방조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3> LG München I, Urteil vom 1.2.2018 - 7 O 17752/17; OLG München, Urteil von 14.06.2018 - 29 U 732/18.

- 정보사회저작권지침(제8조 3항)과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지침(제11조 3문)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침(제12조 3항)에 따르면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는 중개자에 대하여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강제규정이어서 회원국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됨. 다만, 회원국은 명령의 방식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 TMG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률에 의해서 책임이 없더라도 일반 법률(예를 들어 민법이나 행정법)에 따라서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명령을 근거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TMG 제7조 3항 1문). 또한 권리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랜 제공자는 정보의 이용을 직접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TMG 제7조 4항).
- TMG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원고에게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가입자가 해당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방해자 책임을 지게 됨.
- 행위자나 방조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자의적이고 상당히 인과적으로 권리 침해에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서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방해자 책임은 위법한 침해를 직접 행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확대되지 않아야 하므로 점검의무를 요건으로 함. 점검의무의 범위는 방해자로 청구될 자에게 그러한 점검이 기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짐.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전달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을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는 금지되지만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일반 법률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특별한 감시의무는 허용됨.
- 하지만 피고의 인터넷 접속 제공은 법질서에 의해서 허용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영업모델이므로 그 자체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영업모델이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되거나 그 활동을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피고의 점검의무는 원고가 구체적인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 28일 통지를 한 후 비로소 존재하게 됨.
- 검찰의 수사절차를 통해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kinox.to 사이트 운영자를 알 수 없고 이 운영자가 호스트 제공자를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나 호스트 제공자에게 침해 경고를 사실상 할 수 없으므로 침해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피고에게 침해에 대한 방해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함.
- 따라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는 원고의 영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kinox.to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차단해야 함. 도메인과 IP 차단은 피고에게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조치임.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침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더라도 침해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됨.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한편, 2017년 TMG의 개정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방해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EU 지침과 TMG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해서 여전히 방해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기대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NA3WW8>

<https://bit.ly/2NA2G5v>

영국

짧은 손글씨 메모도 유효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일 수 있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영국 법원은 휘갈겨 쓴 짧은 손글씨 메모도 저작권 양도 계약서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기본적 요소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법원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통해 업무상 저작물의 범주를 정의함.

배경

- 원고는 남편과 함께 Mei Fields Designs Ltd (이하, MFD) 라고 하는 영국의 카드 디자인 회사를 직접 창업하여 현재 이 회사의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음.
- MFD를 창업하기 전에, 피고는 Metropolis라는 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음.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Metropolis의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Metropolis에 고용되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제공받았음.
- Metropolis는 재정상의 이유로 MFD에 합병되었음. 이 때, 원고는 짧은 손글씨로 ‘내 모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Metropolis로부터 양도되어) 디자이너 (본인) 과 회사 (MFD) 에 귀속된다’는 메모를 남김. 그리고 해당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디자이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메모도 덧붙임. (이하, ‘이 사건 메모’)
- 피고는 Saffron이라고 하는 영국의 카드 제작, 판매 회사와 이 회사의 임원인 Steele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디자인한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함. 이 계약은 2016년 3월 21일, 원고의 의사를 통해 만료됨.

사실 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저작물 이용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판매해 왔다는 이유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카드를 판매하였다며 복제권 침해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보다 명확한 판결을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그룹 A와 그룹 B로 나눔. 그룹 A는 원고와 피고의 저작권 이용 계약 당시 시중에 판매된 카드 디자인이고 그룹 B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의심되는 카드 디자인임.
- 그룹 A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두 당사자가 계약할 당시에 원고는 Metropolis 소속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창작한 카드 디자인은 업무상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가 Metropolis에 귀속되기 때문. 또한, 비록 그룹 A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Metropolis의 다른 피고용자들과 같이 창작한 공동 저작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론적으로 피고가 Metropoli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은 인정하나, Metropolis 소속이 아닌 원고는 그룹 A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그룹 B에 대해서는, 원고의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만 차용했을 뿐이고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그룹 A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A의 유일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그룹 A의 디자인은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일부도 아니었으며 자신은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그룹 A를 창작했으므로 이는 업무상 저작물의 범주도 아니며 결합 저작물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또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Metropolis가 재정상의 이유로 MFD에 합병되었을 당시 남긴 ‘이 사건 메모’를 제시함.
- 그룹 B의 아이디어만을 차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보인다면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쟁점**

- 짧은 메모도 저작권 양도 계약서로의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
- 그룹 A의 창작이 업무상 저작물에 속하는지의 여부.
-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관련 규정**

- 영국 저작권법 제11조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대하여 ‘미술 저작물이 피고용인의 직무 과정 중에 제작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라고 정의함.

- 동법 제17조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대하여, 제2항에서 ‘복제는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제재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제3항에서 미술저작물의 복제는 2차원적 저작물을 3차원으로 복제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의함.
- 동법 제18조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23조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저작권의 2차적 침해에 대해 정의함.

판결

- 2018년 6월 6일, 법원은 그룹 A는 Metropolis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원고가 Metropolis에 재직했을 당시 부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의 일부가 아닌 개인적 장소와 시간을 할애하여 그룹 A를 디자인함.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룹 A를 창작하였다는 증언과 증거가 일치한다며, 그룹 A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유일하고 정당한 저작권자라는 판결을 내림.
- 또한 ‘이 사건 메모’도 Metropolis가 그룹 A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임.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짧은 손글씨 메모이지만 법적 증거로서 원고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비록 Metropolis가 그룹 A의 업무상 저작권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메모’를 통해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됨. 따라서 원고는 소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저작권 관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즉, 저작권 관련 계약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메모’처럼 얼마든지 간단하게 체결될 수 있음.
- 또한 해당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외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저작물은 최초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명백한 기준도 제시하기 때문에 추후 업무상 저작물 관련 법적 분쟁에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zj4E79>

<https://bit.ly/2zf3idO>

이탈리아

**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도 건축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2018년 3월 28일 밀라노 항소법원은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 역시 독창적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장식을 구분하면서 건축물의 인테리어 장식은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시사 사실 관계

- 유명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인 원고는 소비자 유치를 위하여 70,000유로를 투자하여 매장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콘셉트 스토어(Concept Store)^{<1>} 형태의 매장들을 개장함.
-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는 단순함과 대칭을 특징으로 하여 최소한의 장식적 요소만을 구비함.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는 2개의 대형 역광 그래픽이 측면에 배치된 개방된 입구, 반복적인 급경사 구조로 구성되고 투명한 플렉시 유리(Plexiglas)로 이루어진 칸막이를 특징으로 하는 측면 진열 공간, 제품을 지탱하고 지지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점의 중앙에 위치한 곡선의 가장자리를 가진 아일랜드(islands)^{<2>}, 급경사 진열대 안에 내장된 TV 스크린, 동일한 색상과 디스코 효과를 제공하는 조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 검정색 및 핑크색/보라색을 압도적으로 사용함.
- 원고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를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1> 콘셉트 스토어는 매장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이 철저히 하나의 콘셉트에 맞춰져 있는 곳을 지칭함.

<2> 공간의 중앙에 배치되는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가구임.



원고의 매장 전경



피고의 매장 전경

소송 경과

- 2015년 10월 13일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원고의 매장의 인테리어의 구성 요소의 결합은 원고가 채택하기 전에는 이용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피고가 약간의 변경만을 가한 채 원고가 발전시킨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복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28일 밀라노 항소법원은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 역시 독창적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램프나 의자와 같은 실내 장식의 단일 구성요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인테리어는 다양한 단일 구성요소들의 결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테리어 장식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며 이는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인테리어가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의 산업디자인으로 독창성이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3>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산업디자인이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화적 제도적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는지 여부, 저명한 비평가들의 의견, 전시회나 박물관에서의 전시, 수상 이력, 유명 작가가 창작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기능에 상응하는 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가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모두 고려됨.

- 피고의 인테리어 장식은 원고의 인테리어 장식과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판결 선고 후 150일 이내에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을 철거해야 함.
 - 피고가 원고의 인테리어 장식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손실하였음.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매장 인테리어에 투자한 70,00유로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장식을 구분하면서 건축물의 인테리어 장식은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밀란 지방법원과 로마 지방법원이 2010년과 2013년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반대로 이번 판결은 콘셉트 스토어의 인테리어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함.^{<4>}
- 유럽 사법재판소가 라인, 커브와 형태의 내재적 결합을 통해 재현되는 매장의 레이아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5>} 상표권 행사를 통한 인테리어의 보호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특정 브랜드의 일부로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콘셉트 스토어 자체의 보호에 있어서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Nn9ELd>

<https://bit.ly/2Kr6F6k>

<4> 2010년 5월 밀란 지방법원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매장은 화장품 매장 분야에서 통상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만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이와 마찬가지로 2012년 9월 로마 지방법원 원고의 콘셉트 스토어는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이 아닌 디자인이며 따라서 예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이번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포르투갈과 벨기에에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리스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원고와 피고의 매장과 유사한 인테리어를 가진 다른 화장품 매장들이 이미 존재하며 원고의 매장에 사용된 색채 역시 매우 일반적이거나 화장품 분야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리에주 상사법원 역시 원고의 콘셉트 스토어의 구성이 이를 창작한 건축가의 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 요건인 독창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

<5> Judgment of 10 July 2014, Apple v DPM Case, C-421/13, EU:C:2014:2070 참고.

태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535개 사이트 폐쇄·블로킹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은 영화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해적판·모방품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535개 사이트를 폐쇄·블로킹함.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폐쇄 조치를,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블로킹 조치를 취함. 사이트 폐쇄·블로킹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을 벗어난 태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예상된다.

배경

- 인터넷 사회 진입 이후 태국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었음.
 - P2P, 딥 링크 사이트, 비트 토렌트 사이트, 전자게시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블로그,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게임 룸이나 카페를 이용한 해적판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함.
- 이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자 보호, 권리 집중관리체제의 정비, 불법 행위의 질·양에 따른 제재 체제 정비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구함.
- 2015년에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Copyright Act, B.E. 2537)을 개정함.^{<1>}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인터넷을 통한 해적판·모방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해적판·모방품의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3항).
 -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1> 이수진,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동향」 제2015-0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쪽.

- 한편 2016년 8월에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이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Suppr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Subcommittee, SIPIS)를 설치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및 권리자 보호,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논의를 시작함.
- 2016년 12월에는 20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을 개정하고 디지털 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의 규제 권한을 강화함.
 - 개정 컴퓨터 범죄법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에 대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 목적의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컴퓨터 범죄법 제20조 제3항).

지식재산 보호 동향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1989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한 연례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2>}를 발표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태국은 2007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음.
 - ‘우선감시대상국’은 ‘우선협상대상국’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조사·감시나 개선 요청을 받게 됨.
- 태국 정부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단속 강화에 힘써 왔음.
 -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범죄법 개정 외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홍보, 해적판·모방품 단속 활동 및 모방품 파괴 행사 등을 실시함.
 - 방콕 등 악명 높은 해적판·모방품 판매지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식 지식재산권 단속센터(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enter, IPEC)도 설치함.
 -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6,447건이고 압수품은 306만여 개에 달함. 압수품 중에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 상품이 많았음.

<2>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개요는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5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그 결과 태국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10년 만에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됨.

사이트 폐쇄·블로킹

- 지식재산국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를 디지털 경제사회부에 전달하고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함.
 -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컴퓨터 범죄법에 의거해 저작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 목적의 영구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음.
 - 태국에서는 2006년부터 음란물이나 태국 왕실에 대한 불경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유해가 되는 콘텐츠 등을 블로킹하여 왔음.
- 최근 태국 정부는 영화나 음악 저작물의 무단 전송, 해적판·모방품 판매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535개의 웹사이트를 폐쇄·블로킹함.
-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폐쇄하였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블로킹하였음.
- 지식재산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 감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명확한 권리 침해 증거가 있으면 사이트 폐쇄나 블로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평가 및 전망

- 태국 정부는 10년 만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만큼 현 상황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나 침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94회의 현장 단속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 급습/단속 등을 통해 378건의 침해사례를 발견하고, 186,095건의 물품을 압수하였음”^{<3>}
- 국경을 초월하여 복잡화·지능화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블로킹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이트 블로킹을 안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반대지만, 사이트 블로킹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음.
- 한편 사이트 폐쇄나 블로킹은 해적판 사이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 유효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3> 방콕사무소, “태국, USTR 리스트 탈피 유지를 위한 노력”, 「해외센터뉴스」 제2018-99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쪽.

*** 참고 자료**

<https://bit.ly/2m1EZGy>

<https://www.thaich.net/news/20180626io.htm>

<https://bit.ly/2HxSXxd>

호주

저작권 면책조항 확대 법안 의회 통과

김혜성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2018년 5월 상원을 통과한 면책조항의 적용 확대를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27일 하원을 통과함. 이번 개정은 현행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을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장애인을 돕는 단체, 도서관, 아카이브, 주요 문화기관,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 등의 서비스 제공자로까지 확대한 것임. 이 개정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실히 한 것임. 이는 면책조항의 의미 있는 개선으로 평가되나, 기술 관련 기업들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되어 호주 기업들의 기술적인 혁신 및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배경

- 현행 호주 저작권법 제116AA조 내지 제116AJ조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규정해왔음.
- 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배, 유발 또는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여지가 있을 뿐이었음.
-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2)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했음.

개정 경과

-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수년간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끝에 2015년 12월 개정안 초안을 발표함.
- 미국, 싱가포르, 한국의 면책조항과 비교하면, 현행 호주 저작권법은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호주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한국의 면책조항 시행 상황을 참고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호주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 대체함으로써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이는 공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operators of online services)를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키는 것임.
- 개정안 초안은 검색엔진, 대학, 도서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음.
 - 초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음.
 - 면책조항 적용범위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저작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
 - 그러나 면책조항 적용범위의 광범위한 확대에 반대하는 저작권자 측과의 십여 년간의 논쟁 끝에 초안의 일부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서는 제외됨.

주요 개정 내용

- 면책조항의 적용 확대를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Amendment (Service Providers) Bill 2017]이 2018년 5월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018년 6월 27일 하원을 통과함.
- 현행 저작권법 면책조항 관련 규정들에서 사용된 용어 중 ‘통신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서 ‘통신(carriage)’을 삭제함.
- (1) 통신 서비스 제공자, (2) 장애인을 돕는 단체, (3) 도서관, 아카이브, 주요 문화기관,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제116ABA조 제1항).
 -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① 공중이 직접 또는 도서관 상호 대출 제도(interlibrary loan)를 통해 해당 도서관의 소장 도서 전체 또는 그 일부에 접근할 수 있거나, ②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의회 구성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을 돕는 단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조항은 오직 서비스 제공자가 제116ABA조 제1항의 관련 도서관, 아카이브, 주요 문화 또는 교육 기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음(제116ABA조 제2항).
- 이 개정안은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시행될 예정임.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 부담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제공됨으로써 저작물의 보다 활발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저작권법 면책조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대체함으로써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은 호주 저작권법 규정을 호주-미국 자유 무역 협정과 조화되게 한 것이고 국제적인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개정안은 기술 관련 기업들(tech company)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online content provider)를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외함으로써 혁신 및 호주 기술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znM7Xu>

<https://bit.ly/2KRfIgh>

<https://bit.ly/2KSZofb>

<https://zd.net/2yMHBkV>